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광수(도봉)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0월 17일

발 의 자 : 김광수(도봉)·김용석(도봉)

김광수(노원)·최영수·김동승

한명희·최조웅·박준희·이상묵

이승로·이종필·오경환·유광상

김창원·김제리 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시장이 설치·운영 중인 아리수 음수대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, 아리수 음수대의 수돗물을 수질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수돗물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, 아리수 음수대의 위생 및 유지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은 아리수 음수대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(안 제8조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
- 2)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(별첨)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수질검사) 시장은 설치·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제8조(수질검사) ① 시장은 설치·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